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23	3. / (총 16	6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 략기 획 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강 대 금		044-203-2211
기획혁신담당관	담 당 자	이 수 원	전 화	044-203-2212
공정거래위원회	과 장	류 용 래		044-200-4430
특수거래과	담 당 자	배 문 성		044-200-4438
경찰청	과 장	손 제 한		02-3150-2068
수사과	경 정	김 우 석		02-3150-2626
보건복지부	과 장	임 혜 성		044-202-3490
요양보험운영과	담 당 자	최 문 선		044-202-3514
보건복지부	과 장	오 창 현		044-202-2470
의료기관정책과	담 당 자	윤 동 빈		044-202-2474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승 일		044-202-1861
선별진료검사팀	담 당 자	김 소 연		044-202-1864

코로LHIOI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문판매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문판매분야 9월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8월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왔으나, 일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면회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최소화해야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가족 들의 요구와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지원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로 인해 자살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자살예방상담센터의 상담 서비스가 지역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
-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시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민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유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험도에 비해 타격이 큰 업종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과 기재부에게 피해지원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9월 21일(월)부터 도보 및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시각 및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돕기 위해 119전담구급대 **24대. 48명을 지워**하고 있다.
 - 한편, 9월 21일(월)부터 10월 4일(일)까지 **특수판매업체 406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9월 21일(월)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격리)시설** 무료 입소기준을 완화하여, 샤워실·화장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어려워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격리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게 하였다.
 -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료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 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

< 신청자격 변경사항 >

당초(상반기)	완화(하반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인 업체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 	■ 최근 1년간 평균 <u>고용증가율이 5%이상</u> 이면서 <u>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이상인</u> 업체 ■ <u>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u> 인 업체		











평생친구

- 10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가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로부터 휴양· 관광지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가 정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뿐 아니라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다만, 연휴 기간의 숙박 예약률이 높아* 호텔, 유워시설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 * 추석 연휴 호텔 예약률(9.22 기준) : 강원 평균 94.9%, 제주 평균 56%
- □ 문체부는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관광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V, 누리집, 누리소통망(SNS)를 활용하여 추석 방역 수칙 홍보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동(여행) 시 지켜야 할 여행경로별 · 상황별 수칙을 전파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에서 기본방역지침을 철저히 시행 하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평 생 친 구

- 이를 통해 관광지 방역 및 관광객 방역 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관광지 방역 요원(3,204명 목표) 배치하여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9월 28일(월)부터는 **지역관광협회 주관**으로 관광사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 **강원도**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 단위의 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시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 9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를 **추석 연휴 전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집중홍보**하는 한편,
 - 호텔·콘도 및 기존 점검 시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던 시설 등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또한,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 운영, 일방통행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정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홍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 주·야간으로 방역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 **일일 상황 점검, 환자 입퇴원 및 병상 현황** 관리 등을 실시하고, **24시간 진단검사체계를 운영**하는 등 비상 방역 체계도 구축·운영하다.







- □ 제주도는 최대 30만 명 내외의 입도가 예상되는 9월 26(토)부터 10월 4일(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 우선,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9월 26일(토)부터 10월 4일(일)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토록 하였다.
-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9월 21일(월)부터 **게스트** 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으며,
- 9월 30일(수)까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주기적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 한편, 연휴 기간에 보건소(6개소), 선별진료소(7개소)를 정상 운영 하고,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등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3 방문판매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로부터 **방문판매 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공정위**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분야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청과 함께 **방문판매 분야 불법 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 한편, 오늘(9.23.)부터는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 8월 20일부터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 •불법 피라미드 및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방법
 -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 (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





평생친구

- □ 한편, **경찰청**은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 9월 22일(화) 기준 방문판매사업장 관련하여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총 126건 · 463명을 수사***하고 **42건 · 188명을 기소**(1명 구속)하였으며, 60건 · 169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운영' 방문판매업법 위반 237명, '집합금지 위반'등 감염 병예방법 위반 221명, 거짓·과장 광고 5명
 - 주요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방문판매사업장 관련 주요 수사사례

▶ (집합금지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7. 4. ~ 7. 29.)'을 위반하여, 7. 15. 화장품 상품설명회 개최한 방문판매업체 대표 및 직원 61명 기소송치 (광주 서부)

【적용법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 300만 원 이하

- ▶ (미신고 방판업) 공정위·지자체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19. 11. 4.부터 노인 등 상대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대표 기소 송치 (서울 강북)
 【적용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 ··········· 1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 ▶ (무등록 다단계) 지자체 등에 다단계업 등록 없이 "가입비를 납부하면 모집하는 회원수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며 8,214명 회원을 모집해 32억 원 상당 부당이익취한 피의자 4명 기소(구속 1) 송치 (부산 지수대)

【적용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 7년 이하. 2억 원 이하

▶ (거짓·과장 광고) '20. 4.경부터 노인들을 상대로 한방효과 등이 있는 회장품인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하여 7천만원 상당 판매한 방문판매업체 기소 송치 (충남청 지수대)

【적용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9조 ………… 5년 이하, 1.5억 원 이하

○ 경찰청은 앞으로도 방문 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 확인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뿐 아니라 방문판매업법 등 관련 법령까지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4 요양시설·요양병원 비접촉 추석나기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시설 추석나기 방안**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방안(6.26.)」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제한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 * 사회적 거리 두기 : (1단계)비접촉 면회 허용, (2·3단계)면회 금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추석 연휴** 동안에도 **면희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 다만,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및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 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한편, 면회 금지 조치에 따른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하여 4개 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요양 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9.24.~10.11.)을 진행한다.
 - *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 동 캠페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설협회는 보호자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간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확인 및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평생친구

【비접촉 방식의 추석나기 예시】

- △ (보호자→시설)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가족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 전달**
- △ (시설주관) 기념 사진·덕담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호자에게 전달, 정기적인 영상통화를 통한 안부확인, 시설 내 합동 차례·전통놀이 등 행사 개최
- □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면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에는 **면회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 다만, 추석 연휴 기간 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노인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면 면회의 대체적 방법인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전국 요양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우선,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의사·간호사 등)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 중중* 및 보호자와 소통이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또는 보조인력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 중증 와상환자는 영상통화 진행시 거치대 등 활용하여 누워서 통화 실시
- ** 연휴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되 환자별 통화 횟수가 고르게 분배 되도록 사전에 보호자와 통화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영
- 또한, 추석을 느낄 수 있는 현수막 등(한복, 명절소품 비치)을 각 병동에 설치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전송하는 추석 포토월 행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영상 면회 등 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입원)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영상통화나 편지 등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안부를 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평생친구

추석연휴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추석연휴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9월 20일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전국에** 6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9월에는 일 평균 1만4천여 건을 검사하고 있다.
 - * 일평균 검사현황: (6월)12.128명→ (7월)9.245명 →(8월)12.492명 →(9.1.~20.)14.085명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 우선 추석 연휴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한 운영**토록 하고, 지역 의료기관(민간 선별진료소)과 협력하여 검사 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환자 발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권역별로 긴급지워팀을 구성·점검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정보를 9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에 게시하고,
 - *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앱, 복지부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
 - 129(복지부 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여 국민들이 선별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2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622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49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84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하고 있다.
- □ 9월 2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27개소, ▲ 학원·독서실방 346개소 등 37개 분야 총 2만738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8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92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06개반, 1,028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 한편,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전신고는 9월 22일 (화)까지 **총 1만672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만5517건(92.8%)이 처리 완료**되었다.
-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관광지 **숙박시설 이용 관련 신고**가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 사례) 캠핑장 이용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평생친구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김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충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평생친구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갑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